

## 출판부 운영규정

제정 2003. 4. 1

개정 2012. 3. 1

개정 2016. 3. 1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출판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출판부 (이하 “출판부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소재)** 본 출판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목적)** 본 출판부는 교내의 학술연구 및 문헌의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인쇄물 간행을 통하여 대학문화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 출판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양교재 및 전공교재의 간행
2. 교양도서, 학술도서 및 기획도서의 발간
3. 교내 일반 간행물의 출판 및 공급
4. 교내의 학술연구물 간행
5. 출판물에 대한 조사 연구
6. 기타 필요한 사업

### 제2장 조 직

**제5조(조직)** 출판부에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.

1. 출판부장 : 문화정보센터장이 겸직하며 출판부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.
2. 직 원 : 도서관 직원이 출판의 기획, 조사연구, 출판의 조정, 출판물의 교정 및 섭외, 도서의 판매, 계약 및 서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, 필요에 따라 전담직원을 둔다.

**제6조(출판위원회)** 필요시 목적에 따라 출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출판물의 저작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, 통상 교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.

### 제3장 출 판

**제7조(출판물의 종류)** 본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각종 전공 및 교양 교재
2. 각종 교양도서 및 기획도서
3. 본교 내 각 단위기관의 간행물
4. 학술 연구서적 및 논문집
5. 기타 특수도서

**제8조(출판의 한계)** 본 출판부는 편,저자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부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하여 출판하며, 이를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**제9조(저작권)** 본 출판부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편찬 또는 저술한 자에게 귀속한다. 단, 출판을 위한 연구비가 지급된 경우의 저작권은 본 출판부에 귀속된다.

**제10조(출판권)** 본 출판부의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은 본 출판부에 귀속한다.

**제11조(원고료)** ① 출판부에서 간행한 교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또는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지급한다.

② 본교 교수로서 국가/연구/교육기관 등으로 부터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받아 개발한 교재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출판도서의 단가)**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재 및 도서의 보급가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 제4장 재 정

**제13조(재정)** 출판부의 재정은 본교보조금, 사업수익금, 기타로 충당한다.

**제14조(회계년도)** 본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

**제15조(재산귀속)**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수익금은 본교 교비회계에 입금 처리하여야 하며 본 출판부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출판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. 4. 1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2. 3. 1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6. 3. 1 일부터 시행한다.